

『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,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- 조례의 목적 명확화(안 제1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사항 정비(안 제2조~제3조)
- 회의록 등 작성 신설(안 제5조)
-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삭제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
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제명을 「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명확화,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, 회의록 작성 의무화,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5개 항목으로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위촉위원 성비균형, 위촉해제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